

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

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Korean Liquors Industry

전한영, 박성기*

Jeon Han Yeong, Park Seong Gi

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

Ministry for Food, Agriculture, Forestry and Fisheries / Food Industry Promotion Division

농림수산식품부는 전통주 등 우리술을 고부가가치 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 기반조성, 우리 술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화, 농업·한식과의 동반성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'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'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. 정부에서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 술 산업을 활성화하여 우리술을 고급화·세계화 하고자 2009년 기획재정부,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'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'을 발표하고 2010년에는 '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을 제정하여 우리술 산업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. 동 계획은 2009년 마련한 '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' 및 2010년 제정된 '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로 체계화한 것으로서, 전통주 제조업체 시설개선과 기술보급, 양조용 원료 품종개발·보급, 우리 술의 품질고급화 및 선진국형 품질관리시스템 도입, 전통주의 세계화 및 과학화, 원료계약재배를 통한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, 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

하고 있다.

동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개년(2011 - 2015)간 우리 술 산업 육성의 목표로 막걸리 등 전통주 산업규모 및 우리 술 수출액 증가, 술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, 한국을 대표하는 명주를 육성하여 세계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. 이를 위해 3가지 분야에 25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과제 추진을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,125억원을 투융자 할 계획이다(연도별 투융자액 : (2011) 156억원 → (2012) 185억원 → (2013) 223억원 → (2014) 262억원 → (2015) 299억원).

우리술 산업 육성 목표

- ◆ 전통주 매출액 증가 :
(‘10) 0.8조원 → (‘15) 1.2조원
- ◆ 술 수출액 증가 :
(‘10) 3.1억달러 → (‘15) 6억달러
- ◆ 국산 농산물 사용량 확대 :
(‘10) 10만톤 → (‘15) 20만톤
- ◆ 세계적인 명주 개발·유통

*Corresponding author: Park Seong Gi
Ministry for Food, Agriculture, Forestry and Fisheries / Food Industry Promotion Division
47, Gwanmun-ro, Gwacheon-si, Gyeonggi-do, Korea
Tel: +82-2-500-1952
Fax: +82-2-503-7798
email: mafpsk@korea.kr

정책과제는 크게 술 산업 진흥 기반조성, 우리 술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화, 술 산업과 농업·한식의 동반 성장 등 3가지 분야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술 산업 진흥 기반 조성

술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분야에 술 제조업체 시설 현대화를 통해 생산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, 술 원료 수매자금과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영세한 중소 제조업체를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(지원(융자) 규모 : (2011) 60억원 → (2015) 150억원).

또한, 현장 애로기술 및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, 2010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컨설팅을 2015년에는 40개 업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 술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벼와 과일에 대하여는 양조에 적합한 품종 개발 연구를 확대하고, 이를 실용화하여 보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(내 재해성 고품질 양조벼 개발 : (2010) 2개 품종 → (2015) 4개 품종, 고기능성 포도주용 포도·머루 개발 : (2010) 2개 품종 → (2015) 5개 품종). 또한 술의 제조, 연구 등 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·교육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한편, 국가 양조자격증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술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도록 하였다(전문인력양성기관 : (2012) 2개 → (2015) 5개, 교육훈련기관 : (2012) 7개 → (2015) 20개).

2. 우리 술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화

소비자들에게 우리 전통주를 보다 친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전통주 홍보관 및 전문판매점의 운영을 지원토록 하고, 농수산물유통공사(aT)의 사이버거래 입점업체 수 확대 등 전통주 통신판매도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(전통주 홍보관 및 전문판매점 : (2011) 7개소 → (2015) 10개소, aT 사이버거래 입점 전통주 업체 수 : (2010) 40개소 → (2015) 150개소). 2010년부터 농식품부가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는 술 품평회도

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술의 품질향상 및 명품주를 선발·육성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. 더불어 2011년부터 시행되는 술 품질인증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한편, 품질관리제를 향후 우리 술 특성과 산업환경에 맞도록 등급화 하여 관리하는 등 품질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(술 품질인증제 : (2011) 4개 주종 → (2012) 7개 주종). 이와함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다 단절된 우수한 전통주를 복원하여 이를 산업화해 나가는 한편, 양조 전문서 제작 및 술 R&D도 강화해 나가고, 외국의 유명한 숙성 명주와 같이 우리 술의 숙성 명주 개발 지원을 위해 '12년부터 숙성방법과 숙성기간별 주질을 분석하여 품질을 개선하는 등의 연구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(전통주 복원 계획(누계) : (2010) 7개 → (2015) 22개, 양조전문서 제작 : (2011) 발효주 분야 2종 및 (2012) 증류주 분야 2종).

3. 우리 술과 농업·한식과의 동반성장

쌀 등 술 제조원료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술 산업과 우리 농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 벼 신품종을 대상으로 양조적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 및 술 제조업체에 알리는 한편, 벼 계약재배단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(2010년 23개 벼 신품종을 대상으로 양조적성 평가를 실시, 다수확품종 3종 및 고품질 4종을 적합품종으로 선정(농촌진흥청), 벼 계약재배단지 : (2011) 3곳 → (2013) 15곳 → (2015) 30곳). 술 원료 주산지를 중심으로 전통주 클러스터 특화 사업을 확대, 그 지방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특산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, 제조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표시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내산 원료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((2011년) 3개소(김포 인삼쌀맥주, 전주 전통모주, 포천 막걸리) → (2015년) 7개소, 지리적표시제 : (2010년까지) 2개 품목 등록 → (2015) 10개). 한편, 지나친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단 등의 예방을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정착시키는 사업도 추진키로 하였다. 방송매체 등과 연계하여 건전한 술 문화 캠페인 전개 및 이를 교육자재로 제작하여 교육기관 등에 보급하는 등 건전한 음주

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. 전 국민을 대상으로 TV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건전한 술 문화 캠페인 추진, 방송 내용을 DVD 등으로 제작하여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등에 교육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.

4. 기타

1) 우리나라 술 산업 일반현황

2009년 기준 우리나라 술시장 규모는 출고가 기준으로 7.8조원 수준이다(유통마진 등을 포함한 최종소비자가 기준으로는 약 25조원 수준으로 추정). 그중 맥주, 소주, 위스키가 전체 술시장의 87% 차지하고 있으며, 수입주는 8.4% 점유하고 있다.

2011년 6월말 기준 주류 제조면허수는 1,681개이며, 탁주(막걸리)가 853개로 전체의 50.7% 차지하고 있으며, 약주·과실주·리큐르 순이다.

2010년 수입은 6.0억\$로 수출(3.1억\$)의 2배 수준이고, 2002년 2.6배보다는 격차가 축소되었다. 수입은 위스키(38%), 포도주(19%)가 큰 비중이며, 최근 포도주 수입이 점증하고 있다. 수출은 소주(39%), 맥주(15%)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최근 막걸리 수출이 급증세이다(막걸리수출액 : (2008) 442만불 → (2009) 628(42%증) → (2010) 1,910(204%증) → (2011) 5,000(전망)).

가) 주요 주종별 현황

①막걸리 : 최근 웰빙트렌드 확산 및 기능적 우수성 홍보와 저도주에 대한 소비자 선호로 2009년 이후 국내외 시장에서 큰폭의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(출고량/시장액 : (2008) 176천kl/3,000억원 → (2009) 261/4,400 → (2010) 412/7,100(추정). 업체수는 많으나 상위 5개업체가 시장의 약 60%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업체는 지역에 기반을 둔 영세규모(연간 매출 1억원 미만이 약 66%)이다.

②맥주 : 술 산업 중 가장 큰 규모(약 47% 차지)로 2개사가 복점체제이다. 원료인 맥아, 홉 등이 대부분 수입되고있으며 국산원료는 일부(약 25%) 사용되고 있다.

③희석식소주 : 10개의 제조사중 상위 6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90%를 차지하고 있다. 대부분 수입원료가 사용되나, 주류 중 수출 1위 품목(2010년 123백만불)이다.

④위스키 : 완제품 형태의 수입품이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으며, 국산 위스키는 원액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병입하여 판매하는 형태이다(국내업체 : 디아지오(1위), 페리노니카(2위), (주)롯데(3위)가 90% 이상 차지)

⑤과실주 : 2007년까지 복분자주와 포도주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, 수입 와인 및 소주의 저도화 등에 따른 시장잠식으로 감소세이다(출고량 : (2005) 20 천kl → (2006) 23 천kl → (2007) 29 천kl → (2008) 27 천kl → (2009) 23 천kl).

⑥약주·청주 : 국내 타주류 성장 및 수입 주류 증가, 명절 등 특정시기 판매 집중 등으로 인한 시장 다각화 미흡 등에 따라 2006년 이후 감소세이다(출고량

표 1. 국내 술시장 현황(2009년 기준)

| | 전체 | 맥주 | 희석식소주 | 위스키 | 과실주 | 탁·약주 | 기타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금액(억원) | 77,533 | 36,029 | 26,900 | 4,506 | 2,873 | 3,689 | 3,536 |
| (비중, %) | (100) | (46.5) | (34.7) | (5.8) | (3.7) | (4.7) | (4.6) |
| (*수입주비중, %) | (8.4) | (1.3) | (-) | (54.9) | (50.0) | (-) | (58.7) |

<출처 : 국제통계연보 및 농수산물무역정보>

표 2. 우리나라 술 제조업체(2011.6.30)

(단위 : 개소)

| 구분 | 합계 | 탁주 (막걸리) | 약주 | 청주 | 과실주 | 맥주 | 희석식 소주 | 증류식 소주 | 위스키 | 브랜드 | 일반 증류주 | 리큐르 | 기타 주류 |
|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|
| 면허수 | 1,681 | 853 | 232 | 6 | 220 | 71 | 18 | 45 | 12 | 8 | 76 | 95 | 45 |

표 3. 민속주와 지역특산주의 요건

| | 요건 | 추천기관 | 면허기관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민속주 |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 중요무형문화재와 시·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| 농식품부장관 (시·도지사 위임) 문화재청장 | 국세청 (세무서) |
| | 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| 농식품부장관 (시·도지사 위임) | |
| 지역특산주 (농민주) |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 및 그 인접 시·군·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 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시·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| 농식품부장관 (시·도지사 위임) | |

주 : 민속주(예) : 문배주, 이강주, 안동소주, 금산 인삼주, 계룡 백일주, 가야 곡왕주
 지역특산주(예) : 고창 복분자주, 지리산 머루주, 영월 더덕주, 광양 매실주, 진도 홍주
 ※ 전통주는 주세경감(50%), 시설기준 완화, 제조자 직접판매 허용, 통신판매 허용 등의 혜택

표 4. 전통주 제조면허 현황(2011.6.30 기준)

| 구분 | 합계 | 탁주 (막걸리) | 약주 | 청주 | 과실주 | 증류식 소주 | 브랜드 | 일 반 증류주 | 리큐르 | 기타 주류 |
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|----|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
| 합계 | 510 | 57 | 84 | 1 | 192 | 24 | 2 | 54 | 67 | 29 |
| 민속주 | 59 | 6 | 23 | 0 | 3 | 8 | 0 | 9 | 7 | 3 |
| 지역특산주(농민주) | 451 | 51 | 61 | 1 | 189 | 16 | 2 | 45 | 60 | 26 |

: (2005) 76 kl → (2006) 63 kl → (2007) 52 kl → (2008) 45 kl → (2009) 41 kl).

⑦기타 증류주 : 대체 품목인 위스키, 브랜드 등 수입주류 증가 및 장기숙성 등을 통한 품질고급화 노력 미흡 등으로 시장이 협소화 되고 있다.

나) 전통주 산업 동향

전통주는「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」및 「주세법」상 민속주(무형문화재, 식품명인), 지역특산주(농민주)를 의미한다(법률상 전통주 개념).

법률상 개념의 전통주 시장규모는 2009년 출고액 기준 약 1,000억원으로 전체 술 시장의 1.3%를 차지하고 있다. 전통주 업체 평균 매출액은 2009년 250백만원, 종업원수는 4명 수준으로 매출이 1억원 미만인 업체가 64%로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다. 일반적인 개념의 전통주 (희석식소주, 맥주, 위스키, 브랜드를 제외한 국산 술)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약 8,000억원으로 추정된다. 법률상 개념의 전통주 제조 면허는 510개로 전체 제조면허(1,681개)의 약 30.3%를 차지하

참고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25개 추진과제

산업진흥기반조성

경영개선 지원 및 기술보급

- ▶ 전통주 등의 제조업체 경영개선 및 제조기술 보급
- ① 제조시설 현대화 및 가공원료 구매자금지원 확대
- ② 융복합형 기업에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확충
- ③ 현장 애로기술 및 경영문제 해결 컨설팅 강화

양조용품종개발

- ▶ 원료 제조용 품종개발·실용화
- ④ 양조용 벼 품종 육성 및 실용화 연구 강화
- ⑤ 양조용 과일 품종 개발 및 실용화 연구 강화

통계·정보선진화 및 제도개선

- ▶ 술 산업 통계·정보 선진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
- ⑥ 술 산업 통계 시스템 구축
- ⑦ 산업진흥에 애로가 되는 생산·판매 규제 완화

선진국형 인적기반 구축

- ▶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및 양조자격증제도 도입
- ⑧ 교육훈련기관 지정·지원
- ⑨ 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한 핵심인력 육성
- ⑩ 국가 양조자격증제도 도입

경쟁력제고 및 세계화

소비촉진을 위한 홍보강화

- ▶ 술 홍보 및 소비촉진 강화
- ⑪ 관련 단체 활동 지원 및 홍보관·통신판매 지원
- ⑫ 세계적인 막걸리 축제 개최
- ⑬ 마케팅보드 결성 추진

품질고급화 및 선진국형 품질관리시스템 도입

- ▶ 품평회 활성화 및 품질인증제 선진화
- ⑭ 품평회를 통한 품질향상 및 명품주 선발·육성
- ⑮ 품질인증제 확대 시행 및 품질관리제 선진화 추진

전통주 세계화 및 과학화

- ▶ 전통주복원·국제교류강화, R&D투자, 양조전문서 제작

- ⑯ 전통주 복원 프로젝트 추진
- ⑰ 전통주 제조법 분류체계 개발
- ⑱ R&D 선진화 기반 확충 및 양조전문서 제작
- ⑲ 숙성명주 개발 지원

농업·한식과의 동반성장

지역농업과 연계강화

- ▶ 전통주 등의 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- ⑳ 원료 계약재배 확대
- ㉑ 전통주 클러스터 특화사업 촉진
- ㉒ 원산지·지리적표시제도 활성화

전통주산업과 한식 연계 강화

- ▶ 전통주와 한식세계화의 동반발전 도모
- ㉓ 식문화와 결합된 우리술 우수성 홍보 확산
- ㉔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과 연계 강화

건전한 음주문화 조성

- ▶ 술에 대한 올바른 태도적립 및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
- ㉕ 올바른 술 문화 교육·홍보 확대